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4)

I. 비공공 부문 및 행정상의 경쟁기업의 정보가공

제3장은 비공공 부문에서의 정보가공과 관련한 것이다. 즉 적용영역, 정보의 수집·가공·이용,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정보의 수정·삭제 및 폐쇄, 감독관청 등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1. 적용영역

제27조는 적용영역(Anwendungsbereich)에 관한 것으로, 다음을 통해 개인관련 정보가 정보가공시설의 투입에 의해 가공, 이용되거나 또는 수집되어지는 또는 정보가 자동화되지 않은 기록에서 또는 기록으로부터 가공되거나 이용되거나 이를 위해 수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즉 연방법을 이행하고 정보보호가 주 법률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경우라면, 비공공 부문을 통해서 또는 공법상의 기업으로서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 연방의 공공 부문을 통해서 또는 공법상의 기업으로서 경쟁에 참여하는 주의 공공 부문을 통하여 앞서서의 내용이 행하여지는 경우이다.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이용이 개인적 또는 가족의 활동을 위해 비롯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고유목적을 위한 정보의 수집·가공 및 이용

제28조는 고유목적을 위한 정보의 수집·가공 및 이용(Datenerhebung, -verarbeitung und -nutzung fuer eigene Zwecke)에 관한 것이다. 고유한 영업목적의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개인관련 정보의 수집, 저장, 변경, 전달 또는 그의 이용이 다음의 경우 허용된다. 즉 ① 계약관계의 목적규정 또는 관련 당사자와 계약에 유사한 신뢰관계에 기여하는 경우, ② 책임 있는 부문의 정당한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련 당사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가공 또는 이용을 제외하는데 더 우월하다는 예외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는 않는 경우, ③ 비록 관련 당사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책임 있는 부문의 정당한 이익에 대해 가공 또는 이용을 제외함에 있어 명백히 이를 능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보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하거나 또는 책임 있는 부문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 등이



다. 개인관련 정보의 수집 시에는 정보가 가공되어야 하는 또는 이용되어야 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다른 목적을 위한 전달 또는 이용은 또한 다음의 경우 허용된다. 즉 ①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의 보존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② 범죄행위의 소추와 같이 국가적인 그리고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해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③ 광고, 시장조사 및 의견조사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 한정된 인적 그룹의 소속에 대한 요약된 정보와 관련된 경우, 즉 a) 이러한 인적 그룹에 있어 관련 당사자의 소속에 관한 신고, b) 직업관계, 지점관계 또는 영업관계, c) 성명, d) 제목, e) 학위, f) 주소, g) 생년월일 등, ④ 관련 당사자가 전달 또는 이용의 제외에 있어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갖는 예외에 대해 어떤 근거도 없는 경우 등이다.

관련 당사자가 책임 있는 부문에 있어 광고, 시장 또는 사상의 연구를 목적으로 그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전달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목적을 위한 이용이나 전달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당사자는 광고, 시장 또는 사상의 연구를 목적으로 관련 정보의 요구 시에도 역시 책임 있는 부문으로부터 보고받아야 한다. 정보요구자가 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부문에서 저장된 관련 당사자의 개인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는 관련 당사자가 정보의 출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이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관련 당사자가 제3항에 의해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는 제3자에 대해 광고, 시장 또는 사상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가공,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정보가 폐쇄되어야 한다.

정보를 전달받는 제3자는 이러한 정보를 그에게 전달되는 목적을 위해서만 가공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다른 목적을 위한 가공이나 이용은 비공공 부문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의 전제 하에서 허용될 뿐이고, 공공 부문에서는 제14조 제2항의 조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전달하는 부문은 그에게 이와 관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고유한 업무목적을 위한 특별한 종류의 개인관련 정보(제3조 제9항)에 대한 수집, 가공 및 이용은, 관련 당사자가 제4a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하지 않는 한, 다음의 경우 허용된다. 즉 ① 관련 당사자가 심리적 또는 법적인 이유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때에는,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생활에 중요한 이익의 보호를 위해 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② 관련 당사자가 명백히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관한 것일 경우, ③ 법률상 청구권의 주장, 실행 또는 변호를 위해 요구되고 관련 당사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수집·가공 또는 이용의 제외에 있어 우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④ 학문적 연구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의 실행에 대한 학문적 이익이 수집·가공 또는 이용에 대한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상당히 능가하는 경우 그리고 연구의 목적이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될 수 없거나 상당하지 않은 지출에 의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특별한 방식의 개인관련 정보의 수집(제3조 제9항)은, 이러한 수집이 건강배려, 의학적인 진

단, 건강부양 및 처치의 목적으로 또는 보건행정을 위해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의 가공이 의료 종사자 또는 그 밖의 상응하는 비밀유지의무 하에 있는 자들에 의해 비롯되는 경우라면, 역시 허용된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특별한 방식의 개인 관련 정보는(제3조 제9항) 제6항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7항 제1문의 조건 하에서만 전달되거나 이용되어진다. 또한 전달 또는 이용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범죄행위의 소추와 같이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해 중요한 위협의 방어를 위해 요구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또는 노동조합 등의 이유로 설립되고 영리적 목적에 근거하지 않는 조직은, 조직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특별한 방식의 개인 관련 정보(제3조 제9항)를 수집, 가공하거나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그의 구성원의 개인 관련 정보를 위해 또는 그들의 활동목적이 규칙적으로 그들과 접촉을 유지하는 자들의 개인 관련 정보를 위해 적용된다. 조직 외에 있는 자들에 대한 또는 부문에 대한 이러한 개인 관련 정보의 전달은 제4a조 제3항의 전제 하에서만 허용된다.

3. 전달을 목적으로 한 업무에 적합한 정보수집 및 정보저장

제29조는 전달을 목적으로 한 업무에 적합한 정보수집 및 정보저장(Geschaftsmässige Datenerhebung und -speicherung zum Zwecke der Uebermittlung)에 관한 것이다.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관련 정보의 업무에 적합한 수집, 저장 또는 변경은, 이것이 광고, 보고

활동, 주소거래 또는 시장 및 사상연구에 기여하는 경우라면, 다음의 경우 허용된다. 즉 ① 관련 당사자가 개인 관련 정보의 수집·저장 또는 변경의 제외에 대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갖는다는 데 대해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② 정보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출처로부터 얻을 수 있고 비록 수집, 저장 또는 변경의 제외에 대한 관련 당사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명백히 우월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공 부문이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 제1항에 따른 목적의 범위에서 전달은 다음의 경우 허용된다. 즉 ① a) 정보를 전달받는 제3자가 그에 대해 아는 것에 정당한 이익을 신빙성 있게 진술한 경우 또는 b) 광고, 시장 또는 사상연구의 목적을 위해 전달되어야 하는 제2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목록화 된 또는 그 밖의 요약된 정보에 관한 것일 경우, ② 관련 당사자가 전달의 제외에 대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갖는다는 데 대해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경우라면, 제28조 제3항 제2문이 준용된다. 제1항 a에 따른 전달 시에 정당한 이익의 존재 및 전달하려는 부문의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의 종류와 방법이 기재되어야 한다. 자동화된 회수절차에 있어서의 전달에서는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는 제3자에게 기술의무가 주어진다.

관련 당사자의 대립하는 의사가 담긴 전자적 또는 인쇄된 표시 또는 등록으로부터 명백한 경우라면, 전자적 또는 인쇄된 주소·전화·파생 또는 비교 가능한 표시로 된 개인 관련 정보의 수령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보의 수령자는, 전자화된 또는 인쇄된 표시 또는 등록된 표현이 전달되



는 경우에 이렇게 표시 또는 등록되어 전달되어 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한다.

4. 익명화 된 형태의 전달을 목적으로 업무에 부합하는 정보수집 및 정보저장

제30조는 익명화 된 형태의 전달을 목적으로 업무에 부합하는 정보수집 및 정보저장(Geschäftsmässige Datenerhebung und -speicherung zum Zwecke der Uebermittlung in anonymisierter Form)과 관련한 것이다. 개인 관련 정보가 이를 익명의 형태로 전달하기 위해 업무에 부합하게 수집되고 저장되었다면, 특정 된 또는 특정 가능한 자연인의 인적 또는 사실적 관계에 대한 개별적인 신고가 귀속하게 될 표식 들은 분리되어 저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식은 저장 목적의 실행을 위해서 또는 학문적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범위에서 개별 신고와 함께 행하여 질 수 있다.

개인관련 정보의 변경은 다음의 경우 허용되는데, 즉 관련 당사자가 변경을 제외함에 있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갖는 예외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경우, 관련 당사자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변경에 대한 제외를 위해 명백히 우월하지 않는 한, 정보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출처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책임 있는 부문이 공개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개인 관련 정보는 그의 저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삭제되어야 한다.

5. 특별한 목적 구속

제31조는 특별한 목적 구속(Besondere

Zweckbindung)에 관한 것으로, 정보보호통제, 정보보장 또는 정보가공시설의 규정에 적합한 보호조치를 위해 저장된 개인관련 정보는 단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만 한다.

6. 관련 당사자의 통지

제33조는 관련 당사자의 통지(Benachrichtigung des Betroffenen)에 관한 것으로, 처음에 고유의 목적을 위한 개인관련 정보가 관련 당사자의 인식 없이 저장된 경우라면, 관련 당사자는 저장, 정보의 종류, 수집·가공 또는 이용의 목적규정 그리고 책임 있는 부문의 동일성에 대하여 통지받아야 한다. 개인 관련 정보가 전달의 목적으로 업무에 적합하게 관련 당사자의 인식 없이 저장된 경우라면, 관련 당사자는 최초의 전달 및 전달된 정보의 종류에 대해 통지받아야 한다.

통지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① 관련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저장 또는 전달을 알게 된 경우, ② 법률 및 정관에 부합하게 또는 계약상의 보존규정에 의해 삭제되어서는 안 되거나, 정보보호 또는 정보보호통제에 기여하거나 그리고 통지가 상당하지 아니한 지출을 요구함으로 인해 정보가 저장되어진 경우, ③ 법률규정 또는 그의 본질에 따라 즉 제3자의 우월한 법적 이익 때문에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④ 전달에 대한 저장이 법률에 의해 명문으로 예정된 경우, ⑤ 학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저장 또는 전달이 요구되는 자에게 통지하는데 상당하지 않은 지출이 요구되는 경우, ⑥ 책임 있는 분야에 대해 관할권 있는 공공 부

문이 다음의, 즉 정보의 공지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게 하거나 또는 그밖에 연방이나 주의 복지에 불이익을 끼친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⑦ 고유의 목적을 위해 정보가 저장되었고 a)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출처로부터 얻게 된 그리고 복수의 해당 사건들로 인해 통지가 부적합한 경우, 또는 b) 비록 통지에 대한 이익이 위협을 능가하는 경우일지라도, 통지가 책임 있는 부문의 업무 목적을 상당히 위협하게 하는 경우, ⑧ 정보가 전달목적으로 업무에 적합하게 저장된 경우 그리고 a)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한,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출처로부터 얻게 된, 또는 b) 목록에 따른 또는 그밖에 요약된 정보에 관한 것인 경우(제29조 제2항 제1호 b), ⑨ 복수의 관련된 사건들로 인해 통지가 부적합한 경우 등이다.

그리고 책임 있는 부문은 어떠한 전제 하에서 통지가 비롯하는 지를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7.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34조는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Auskunft an den Betroffenen)에 관한 것이다. 관련 당사자는 정보의 출처에 관련한 범위에서 그 개인에 대해 저장된 정보,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수령인 또는 수령인의 범위, 그리고 저장의 목적과 관련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는 제공되어야 하는 개인관련 정보의 종류를 보다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개인관련 정보가 전달목적을 위해 업무에 부합하게 저장되었다면, 관련 당사자는, 업무상 비밀의 보존에 대한 이익을 능가하지 않는 한, 출처와 수령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진술이 저장되지 않은 경우라면, 출처와 수령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관련 당사자는, 비록 개인관련 정보가 자동화된 가공으로 또는 자동화되지 않은 기록으로 저장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개인관련 정보를 정보제공 목적으로 업무에 부합하게 저장한 부문에 대해 개인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당사자는, 업무상 비밀의 보존에 대한 이익이 우월하지 않은 한, 단지 출처 및 수령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만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의 제공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정보제공의 다른 형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행하여진다.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는, 관련 당사자에게 제3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제공은 무상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 관련 정보가 전달목적으로 업무에 적합하게 저장된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정보제공을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유상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 유상급부는 정보제공에 의해 비롯된 직접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유상급부는 다음의 경우에는 요구될 수 없는데, 즉 특별한 상황이 정보가 부정확하게 또는 허용되지 않음에도 저장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또는 정보가 수정되거나 또는 제35조 제2항 제2문 제1호의 전제 하에서 삭제된다는 보고를 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정보제공이 유상이라면, 관련 당사자에게는 그의 정보제공청구권의 범위에서 그에게 관련된



정보와 진술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부여된다.

8. 정보의 수정 · 삭제 및 폐쇄

제35조는 정보의 수정 · 삭제 및 폐쇄(Berichtigung, Loeschung und Sperrung von Daten)에 관한 것이다. 개인 관련 정보가 옳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되어야 한다. 개인 관련 정보는 제3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삭제되어질 수 있다. 즉 ① 개인 관련 정보의 저장에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② 인종적인 기원, 정치적 신념, 종교적 또는 철학적인 확신, ③ 노동조합에의 소속에 관한 정보, ④ 건강 또는 성적 생활, ⑤ 범죄행위 및 규정위반에 관련된 경우, ⑥ 그의 정확성이 책임 있는 부문으로부터 증명될 수 없는 경우, ⑦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을 위해 그의 인식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음으로써 고유 목적을 위해 가공되어야 하는 경우 등이다.

개인관련 정보는 그의 정당성이 관련 당사자로부터 다투어지고 그리고 그 정당성 또는 부당성이 확정될 수 없다면 역시 폐쇄되어야 한다. 관련 당사자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부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조사가, 관련 당사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그의 특별한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책임 있는 부문의 이익을 그의 수집 · 가공 또는 이용에 있어 능가한다는 결론에 이른 경우라면, 자동화된 가공 또는 자동화되지 않은 기록에서의 가공을 위해서는 수집 · 가공 또는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부정확하거나 또는 그의 정확성이 다투어지고 있는 개인관련 정보는, 만약 이들이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출처로부터 취득하였고 문서화 할 목적을 위해 저장된 경우라면, 제2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달목적에 위한 업무에 적합한 정보저장에 있어 수정되거나 폐쇄되거나 삭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폐쇄된 정보는 다음의 경우에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전달되거나 이용될 수 있다. 즉 학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증명필요성 또는 그 밖의 책임 있는 부문 또는 제3의 우월적인 이익에 근거하는 이유로부터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9. 감독관청

제38조는 감독관청(Aufsichtsbehoerde)에 관한 것으로, 감독관청은, 개인관련 정보의 자동화된 가공 또는 자동화되지 않은 정보 내에서 또는 자동화되지 않은 정보로부터 개인관련 정보의 가공 또는 이용이 제1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회원국의 권리를 포함하여 규율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 규정의 이행을 통제한다. 감독관청은 단지 감독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로부터 저장된 정보를 가공하고 이용할 수 있다.

감독관청은 제4e조 제1문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4d조의 고지의무 있는 자동화된 가공에 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제32조 제2항에 따른 등록업무도 수행한다. 열람권은 출입할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제4e조 제1문 제9호에 따른 신고에 의해 확장되지 않는다. 등록사항은 모든 자료로부터 열람되어 질 수 있다.

동 법과 정보보호에 대한 다른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의 보장을 위해 감독관청은, 이 규정들이

개인관련 정보의 자동화된 가공 또는 자동화된 기록에서 또는 자동화되지 않은 기록으로부터 개인관련 정보의 가공을 규율하는 경우라면, 제 9조에 따른 요청의 범위에서 확정된 기술적 또는 관리상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0. 정보보호법상의 규정의 이행 촉진을 위한 행위규칙

제38a조는 정보보호법상의 규정의 이행 촉진을 위한 행위규칙(Verhaltensregeln zur Foerderung der Durchfuehrung datenschutzrechtlicher Regelungen)에 관한 것이다. 책임 있는 부문의 특정된 집단이 대리하는 직업단체 및 다른 단체는 관할권 있는 감독관청의 정보보호법상의 규정의 이행 촉진을 위하여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감독관청은 그들이 제출한 법안과 현행 정보보호법과의 일치성을 조사하게 된다.

II. 특별규정

제4장은 특별규정에 관한 것으로, 직업 또는 특별한 직무상 비밀에 관련된 개인관련 정보의 목적구속, 연구시설 및 매개체를 통한 개인 관련 정보의 가공 및 이용, 독일변혁기의 정보보호 수탁자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직업 또는 특별한 직무상 비밀에 관련된 개인 관련 정보의 목적구속

제39조는 직업 또는 특별한 직무상 비밀에 관

련된 개인관련 정보의 목적구속(Zweckbindung bei personenbezogenen Daten, die einem Berufs- oder besonderen Amtsgeheimnis unterliegen)에 관한 것이다. 직업 또는 특별한 직무상 비밀 하에 있고 그의 직업상 또는 직무상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침묵할 의무를 지는 부문이 처리하여야 할 개인관련 정보는 이러한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목적을 위해서만이 책임 있는 부문으로부터 가공되거나 이용되어야 한다. 비공공 부문에로의 전달에 있어서는 침묵할 의무를 지는 부문이 동의하여야 한다.

정보는, 목적의 변경이 특별법에 의해 허용된 경우에만 다른 목적을 위해 가공되거나 이용되어 질 수 있다.

2. 연구시설을 통한 개인 관련 정보의 가공과 이용

제40조는 연구시설을 통한 개인 관련 정보의 가공과 이용(Verarbeitung und Nutzung personenbezogener Daten durch Forschungseinrichtungen)에 관한 것이다. 학문 연구의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저장된 개인 관련 정보는 단지 학문 연구를 위한 목적을 위해 가공되거나 이용될 수 있다. 개인관련 정보는, 연구목적에 따라 가능하다면, 익명화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특정된 또는 특정이 가능한 개인의 인적 또는 사실적인 관계에 대한 개별진술이 귀속되어질 수 있는 징표로서 따로 저장되어야 한다. 이는, 연구의 목적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 개별적인 신고와 함께 행하여져야 한다.

학문 연구와 관련된 분야는 관련 당사자가 동



의하거나, 현대사의 사건에 대한 연구결과의 기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매개체를 통한 개인관련 정보의 수집·가공 및 이용

제41조는 매개체를 통한 개인관련 정보의 수집·가공 및 이용(Erhebung, Verarbeitung und Nutzung personenbezogener Daten durch die Medien)에 관한 것이다. 각 주는 그들의 입법에 있어서 다음의, 즉 언론기업 및 언론보조기업의 개인관련 정보의 수집·가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단지 고유의 언론·편집상의 또는 문학 적 목적에 대해서만 이와 관련 있는 책임규정을 포함하여 제5조, 제9조 및 제38a조 규정에 상응하는 규정에 대해서 제7조를 준용하게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인관련 정보에 대한 언론·편집상의 수집, 가공 또는 이용이 독일변혁기를 통해 관련 당사자의 반대주장의 공개를 위해 행하여진 경우라면, 저장된 정보에 대한 반대주장이 행해져야 한다. 누군가가 독일변혁기의 보고에 의해 그의 인격권이 침해당한 경우, 보고된 그 개인과 관련하여 저장된 정보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보제공은 관여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과의 형량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

4. 독일변혁기의 정보보호 수탁자

제42조는 독일변혁기의 정보보호 수탁자(Datenschutzbeauftragter der deutschen Welle)에

관한 것이다. 독일변혁기에는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수탁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정보보호를 위한 수탁자가 임명된다. 임명은 행정위원회를 통해 연임이 가능한 4년 임기로 감독자의 제의에 의해 행하여진다. 정보보호를 위한 수탁자는 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동 법률의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통제한다. 그는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이며 단지 법률에만 구속된다. 그 밖의 점에 있어서 그는 행정위원회의 직무감독 등에 따른다. 모든 사람은 제21조 제1문에 따라서 정보보호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정보보호를 위한 수탁자는 독일 변혁기의 기관에 대해 2년에 한번, 최초는 1994년 1월 1일에, 활동보고를 하여야 한다.

III. 종결규정

제5장은 종결규정으로 범칙 및 형벌규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범칙규정

제43조는 범칙규정(Bussgeldvorschriften)에 관한 것이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한 것이다. 즉 ① 제4d조 제1항에 반하여, 또한 제4e조 제2문과 관련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하게 또는 완전하게 또는 적시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 ② 제4f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2문에 반하여, 또한 동조 동항 제3문과 제6문과 관련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수탁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해

진 방법으로 또는 적시에 정보보호를 위한 수탁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자, ③ 제28조 제4항 제2문에 반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하게 또는 적시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관련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아니한 자, ④ 제28조 제5항 제2문에 반하여 개인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용한 자, ⑤ 제29조 제2항 제3문 또는 제4문에 반하여 그곳에 표시된 이유 또는 그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의 종류와 방법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⑥ 제29조 제3항 제1문에 반하여 개인관련 정보를 전자화 또는 인쇄된 주소, 전화번호, 파생 또는 비교 가능한 표식으로 수령한 자, ⑦ 제29조 제3항 제2문에 반하여 표식의 인수를 확실히 하지 아니한 자, ⑧ 제33조 제1항에 반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거나, 충분하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⑨ 제35조 제6항 제3문에 반하여 반대주장 없이 정보를 전달한 자, ⑩ 제38조 제3항 제1문 또는 제4항 제1문에 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거나, 충분하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적시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조치를 수인하지 아니한 자, ⑪ 제38조 제5항 제1문에 따른 집행 가능한 규정에 반하여 행위한 자 등이다(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한 자이다. 즉 ① 권한 없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개인관련 정보를 수집, 가공한 자, ② 권한 없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개인관련 정보를 자동화된 절차를 이용하여 회수를 위해 보유하는 자, ③ 권한 없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개인관련 정보를 회수하

거나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정보화된 가공으로부터 또는 자동화되지 않은 기록을 만들어 내는 자, ④ 부정확한 진술에 의해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아니한 개인관련 정보의 전달을 절취한 자, ⑤ 제16조 제4항 또는 제28조 제5항 제1문에 반하여, 또한 제29조 제4항, 제39조 제1항 1문 또는 제40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계속 제공함으로써, 다른 목적을 위해 전달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 ⑥ 제30조 제1항 제2문에 반하여 제30조 제1항 제1문에서 표시된 또는 제40조 제2항 제3문에 반하여 제40조 제2항 제2문에 표시된 개별적인 진술이 있는 표식을 함께 수집하는 자 등이다(제2항).

규정위반 시에는 제1항의 경우에는 25,000 Euro의 벌금에, 제2항의 경우에는 250,000 Euro의 벌금에 처해진다.

2. 형벌규정

제44조는 형벌규정(Strafvorschriften)에 관한 것으로, 제43조 제2항에서 언급한 고의적 행위를 유상으로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행위한 자는, 2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행위는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소추된다. 관련 당사자, 책임 있는 부문,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 수탁자 및 감독관청이 정당한 고소권을 갖는다.

IV. 경과규정

제6장은 경과규정으로서 동 법의 향후 이용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지속적인 이용

제45조는 지속적인 이용(Laufende Verwendung)에 관한 것으로 2001년 5월 23일에 이미 시작된 개인관련 정보의 수집·가공 또는 이용은 이 시점 이후 3년 이내에 이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동의되어야 한다. 이 법률의 규정이 유럽 의회의 95/46/EG지침 및 1995년 8월 24일, 집행위원회의 지침의 적용영역 외에서 개인관련 정보의 가공 시 개인의 보호를 위해 그리고 자유로운 정보거래를 위해 적용되는 경우에, 2001년 5월 23일에 이미 시행된 개인관련 정보의 수집·가공 또는 이용은 이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이 법률의 규정에 대해 동의되어야 한다.

2. 개념규정의 계속적용

제46조는 개념 규정의 계속적용(Weitergeltung von Begriffsbestimmungen)에 관한 것이다. 연방의 특별 법규정에서 'Datei(자료)'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에, 'Datei'란 특정된 징표에 따라 자동화된 절차에 의해 이용되어질 수 있는 개인관련 정보의 집적을 말하거나 또는 동일하게 만들어진 그리고 특정한 징표에 따라 지정·변형 및 이용될 수 있는 각각의 그 밖의 개인관련 정보의 집적을 말한다. 비록 이들이 자동화된 절차에 의해 변형되고 이용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록물과 기록집적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방의 특별 규정에 있어서 'Akte(기록)'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Akte'는 제1항의 'Datei' 개념에 속하지 않는 개개의 직무상 또는

복무상의 목적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영상 및 음향전달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에겐 사건(진행과정)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는 사전초안 및 메모 등도 포함되지 아니 한다.

연방의 특별규정에서 '수령인'의 개념이 이용되는 경우, '수령인'은 책임 있는 부문 외의 개개인 또는 부문을 말한다. 수령인은 국내, EU의 다른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구역에 대한 협정의 다른 계약국에서 개인관련 정보를 위탁하여 수집·가공 또는 이용하는 개인 및 부문과 같은 관련 당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V. 맺으며

이상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의 법제와는 그 규율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현재 국회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일원화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꾀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 중이고 또한 정부에서 만든 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는 향후 개인정보의 보호가 통일적으로 행하여 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업그레이드 과정이라 하겠다.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의 내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법제의 정비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류 승 훈

(선문대 법대 교수)